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 개선방안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유 지 웅

<제 목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
II. 아동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4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4
2. 아동 성폭력 범죄의 특징	5
III.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추세	8
1. 범죄 발생 추세	8
2. 아동성폭력 암수범죄	14
IV. 정부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	18
1. 개정 법률안	19
2.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22
V. 경찰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 현황과 개선방안	28
1. 경찰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	28
2.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대책 개선방안	31
VI. 맺음말	40
<참고문헌>	42

<표 차례>

<표 1>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 추세 (단위: 건)	9
<표 2>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11
<표 3> 성폭력 상담소 내담자의 성폭력 피해 유형 (단위: 건, %)	12
<표 4> 연령대별 성폭력 피해 내담자 (2008-2009) (단위: 명, %)	13

<그림 차례>

<그림 1> 아동 성폭력(13세 미만) 범죄 발생 추이 (단위: 건)	9
--	---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해 ‘조두순 사건’에 이어 올해 ‘김길태 사건’으로 불리는 아동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논의와 대응책들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도 교내에서의 아동 집단성폭행 등 유사한 형태의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최근에 일어난 이 두 사건은 그 범죄의 끔찍함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과 개정이 빠르게 이뤄지는 한편, 재정적으로는 아동성폭력 관련 예산이 약간이나마 증액되고 있으며,¹⁾ 아동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정부기관들과 산하연구기관에서의 정책 대안 모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²⁾

학계에서는 정부가 최근의 고조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강화된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러한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급하게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우려의 목

1) 국회에서는 2010년 아동성폭력 관련 예산을 83억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최영희 의원이 증액 요구한 관련예산은 227억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통과된 예산은 83억 증액에 그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동성폭력 관련 예산증액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2010.1.15).

2) 특별히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의 정부기관과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산하 연구기관에서의 관련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리 가운데에는 최근의 강화된 법적 제도적 보완책들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소수의 일부 가해자들에게만 이중 삼중의 중복된 처벌을 가하는 반면, 피해자 신고 단계를 비롯하여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 재판 과정에서 낮은 신고율과 낮은 기소율로 범망을 피해나가는 대다수의 아동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외국의 여러 가지 제도 도입을 통해서 가해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도입된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이 글에서는 개정된 법률안과 각종 대책을 통해, 최근 정부의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고,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형사절차상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최근 법 제도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아동성폭력 관련 대책들을 검토하고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대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서 이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는 아동성폭력의 개념과 특성을 살피고, 제3장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공식범죄통계와 아동성폭력 상담기관 상담통계를 중심으로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추세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본론적으로 최근 아동성폭력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도입된 정부의 관련 대책들을 검토하고, 제5장에서는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대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추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찰과

검찰의 공식통계자료인 「범죄분석」, 「범죄통계」 자료와 성폭력상담기관의 상담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아동성폭력 관련 법률 분석과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성폭력 관련 연구논문들 외에도 경찰과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정부기관 산하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와 토론 간담회 자료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행하였다. 더불어 성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과의 면담과 토론회 등을 통해 현 시점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아동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법률적으로 아동성폭력의 개념은 아동의 연령 기준과 성폭력의 개념으로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 아동의 연령 기준은 13세 미만을 가리킨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나,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연령 기준을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으로 삼고 있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유를 해치거나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 따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은 강간의 다른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반항 불능 또는 현저한 반항 곤란을 이용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의미한다.³⁾ 따라서 아동성폭력의 개념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서⁴⁾ 성추행을 포함한다.

이러한 아동성폭력의 개념은 아동을 피해자로 상정한 개념이다. 즉, 가해자를 성인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유아인가, 아동인가, 청소년인가에 따라서 유아 성폭력, 아동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등으로 나눈

3) 홍봉선, “아동성폭력 예방정책의 현재”, 제4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10, 여성부, 38면.

4) 민영성,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 범죄예방”, 법학연구(부산대학교), 제50권 제2호, 2009, 4면; 박기범,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2006, 240면; 강은영,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39-51면.

것이다. 통상적으로 아동 성폭력 개념은 이러한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그러나 성인을 가해자로 가정한 이러한 유형 분류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성폭력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심영희(2009)는 피해자 중심의 유형 분류를 보완하여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모두 고려한 유형화 방식을 제시한다.⁵⁾ 이러한 분류 방식에 따르면, 성인에 의한 유아·아동·청소년 성폭력 외에도 청소년에 의한 성인 성폭력, 청소년간의 성폭력, 아동간 성폭력 등이 새롭게 유형화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아동성폭력 유형화에 따라 성인을 가해자로 상정하고, 아동성폭력의 개념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곧 성폭행과 성추행 포함)’으로 정의하여 논의를 전개한다.⁶⁾

2. 아동 성폭력 범죄의 특징

가. 성범죄자의 특징

국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분석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2007)에서는⁷⁾ 국내 아동성폭력 범죄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가해자는 30대와 40대가 다수를 이루고, 피해아동과 가해자는 서로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강간의 경우 친부, 의부, 모의 동거인 등에 의한 강간의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특성에서 강간은 동일 피

5) 심영희, “어린이 성폭력의 변화와 요인: 지구화의 맥락에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120면.

6) 한편 여성부에서 발행한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에서는 아동성폭력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정의한다(여성부,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경찰관용).

7) 국가청소년위원회, 제1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2007, 61-62면.

해자에게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덕경 외(2007)의 연구에서는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들은 알콜중독, 소아성기호증,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포함한 인격장애 등 병리적 장애를 특징으로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⁸⁾강은영(2000)은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행동은 성적 욕구보다는 정서적 욕구 또는 통제욕구의 충족이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⁹⁾

나.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국내 아동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유형과 비교하여 낮은 신고율과 낮은 형량, 낮은 기소율과 구속율을 특징으로 한다. 아동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⁰⁾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¹¹⁾ 아동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특성은 범죄피해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아동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은 40%에 불과하며, 구속율은 36%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¹²⁾ 아동성폭력 범죄의 낮은 구속율과 기소율은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인데, 아동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은 여러

8) 윤덕경 외,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25-26면.

9) 강은영,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50면.

10) 윤상민,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2004, 39-74면.

11) 김지영(2009)이 2007년 한해 동안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판결문과 전과경력조회표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미성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1,839명인데, 그중 친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모두 141명으로서, 미성년 친족에 대한 성범죄 비율은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지영,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1084면).

12) 표창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모색,”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성문화 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집,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4면.

가지로 증거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피해 아동은 범죄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데, 성인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죄의식에서 범죄 피해 상황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사실을 혼동함으로써 발생하지 않는 일을 발생한 것처럼 진술할 개연성도 있어서 아동의 진술의 증거능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¹³⁾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의자를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 확인절차는 피해 아동에게 커다란 두려움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가까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이러한 확인절차는 더욱 큰 어려움에 놓인다.¹⁴⁾

아동성폭력 범죄의 이러한 특수성에서 아동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경찰에서는 아동성폭력 전담수사제도, 진술녹화제도, 아동심리전문가 참여제도 등 아동의 진술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진술 능력과 증거력을 높이고, 수사절차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은 여전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 글의 본문에서 이뤄질 것이다.

13) 이미정, “아동성폭력 전담수사제의 효율적 대안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4호, 2009, 52면.

14) 신호철,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방법 및 재판방식의 특수성에 관한 고찰, 법무연수원 해외연구보고서, 2005, 270-271면.

Ⅲ.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추세

1. 범죄 발생 추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이 파악하여 집계하고 있는 공식통계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암수범죄의 규모가 워낙 크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암수범죄가 많은 것은 범죄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피해 사실을 감추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집계한 공식통계를 통해서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발생건수 비교를 통해서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통계자료는 경찰의 「범죄통계」, 검찰의 「범죄분석」 등과 같은 공식 범죄통계이다. 한편,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으면서 관련기관에 의해 파악된 피해자 상담통계가 있다. 이 절에서는 먼저 경찰과 검찰의 통계자료를 통해 범죄 발생 추세를 살펴보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집계한 성폭력 상담통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의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추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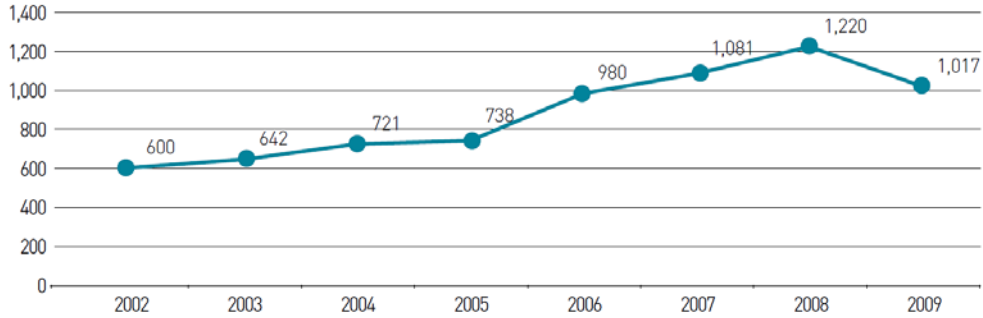
<표 1>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 추세 (단위: 건)

	성폭력범죄		아동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발생건수	아동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1999	8,830	18.9	478	5.5
2002	11,688	24.5	595	7.0
2005	13,631	28.3	785	10.0
2008	16,234	33.4	1,194	16.9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00~ 2009); 이미정, “아동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아동성폭력 예방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84면 <표> 재구성.

<표1>은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단위로 전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와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를 아동성폭력 범죄의 그것과 비교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성폭력범죄와 함께 아동성폭력 범죄는 발생건수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로 보아도 성폭력범죄와 아동성폭력범죄는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전체 성폭력범죄와 아동성폭력범죄의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성폭력 범죄는 지난 1999년 인구 10만명당 18.9건이던 것이 2008년에는 33.4건으로 늘어나 1.8배 증가했다. 아동성폭력 범죄는 1999년 인구 10만명당 5.5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가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특별히 아동성폭력 범죄는 더욱 높은 증가를 보였다.

<그림 1> 아동 성폭력(13세 미만) 범죄 발생 추이 (단위: 건)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2010)

<그림1>은 경찰의 「범죄통계」(이전의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¹⁵⁾ 경찰의 공식통계상으로 볼 때에도,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02년 이후 200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2002년 600건이던 발생건수는 2008년에는 1,22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히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건수는 매해 10% 이상 증가했다. 최근 2009년 발생건수는 1,017건으로 전년대비 200건 가량 감소하였고 2010년 전반기까지 통계를 볼 때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5) 공식통계로서 검찰청에서 발표하는 「범죄분석」의 아동성폭력 발생건수는 경찰백서 통계보다는 약간 낮다. 검찰청에서 집계한 최근 4년 동안 아동성폭력 발생건수는 2006년 932건, 2007년 1,042건, 2008년 1,182건, 2009년 989건이다(검찰청, 「범죄분석」, 2007-2010).

<표 2>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성폭력 발생건수	아동성폭력 발생건수	아동성폭력 비율(%)
2005	13,446	738	5.5
2006	15,326	980	6.4
2007	15,325	1,081	7.1
2008	17,178	1,220	7.1
2009	18,351	1,017	5.5
2010.6	9,440	445	4.7

출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통계; 이호중,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의 인권법적 쟁점”,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0, 45면 <표> 재구성.

<표2>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전체 성폭력 범죄와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아동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5%에서 2006년 6.4%, 2007년 7.1%까지 높아졌다가 2009년에는 5.5%, 2010년 전반기까지 4.7%로 낮아지고 있다.

최근 공식통계상의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감소세만으로 아동성폭력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유형과 비교해서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동성폭력 연구자들은 아동성폭력 범죄피해 신고율이 실제 범죄피해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3> 성폭력 상담소 내담자의 성폭력 피해 유형 (단위: 건, %)

연도	계	강 간	성추행	기 타
2006년	27,286	11,588	10,714	4,984
	100%	42.5	39.3	18.2
2007년	25,443	9,286	9,720	6,437
	100%	36.5	38.2	25.3
2008년	27,636	10,256	10,432	6,948
	100%	37.1	37.7	25.1
2009년	33,659	14,137	13,452	6,070
	100%	42.0	40.0	18.0

자료: 여성가족부, 2009년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보고, 2009.

주1) 기타내역 : 성희롱,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음란전화 등

성폭력범죄 발생 추세는 성폭력 상담소 상담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상담통계 자료는 개별적으로 민간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되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는 하지 않는 피해자의 규모, 즉 숨은 성폭력 피해 규모와 공식통계에서 집계한 피해자 규모 사이의 중간 단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전국 200여개의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내담자의 성폭력 피해 유형(<표3>)과 연령별 피해 인원 현황(<표4>)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성폭력 상담소 내담자의 성폭력 피해 유형은 성폭행과 성추행이 각각 40% 내외로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중에서 성폭행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42.0%, 성추행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40.0%로서, 성폭력의 두 유형에 대한 상담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16) 심영희, 앞의 논문, 2009, 127면.

<표 4> 연령대별 성폭력 피해 내담자 (2008-2009) (단위: 명, %)

연도	계	피해자 연령					
		7세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0세 미만	60세 이상	미상
2008년	27,636	1,194	4,127	7,758	11,777	538	2,242
	100%	4.3	14.9	28.1	42.6	1.9	8.1
2009년	33,659	944	4,375	10,287	15,115	546	2,392
	100%	2.8	13.0	30.6	44.9	1.6	7.1

자료: 여성가족부, 「2009년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보고」, 2009.

2008년과 2009년 전국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내담자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를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2008년에는 피해자 27,636명 가운데 아동(13세 미만)은 5,321명(19.2%), 13-19세 청소년은 7,758명(28.1%)을 차지했다. 2009년의 경우에는 상담을 의뢰한 성폭력 피해자 33,659명 가운데 아동(13세 미만)은 5,316명(15.8%), 13-19세 청소년은 10,287명(30.6%)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두 해 동안의 성폭력 상담소 내담자 중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가량은 아동과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에서 집계한 아동성폭력 범죄 공식통계상으로는 지난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오다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전반기에 발생건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내담자 피해 상담 통계 자료에서는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미정(2009)은 최근 아동성폭력 범죄가 양적인 증가추세와 더불어 피해자의 저연령화, 가해자의 재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¹⁷⁾

17) 이미정, 앞의 논문, 2009, 49면.

2. 아동성폭력 암수범죄

공식통계에 나타난 아동성폭력 범죄 규모는 실제 발생 규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나 피해자의 명예훼손, 범죄 피해가 밝혀졌을 경우에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이 피해자의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다.

성범죄 암수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범죄피해자 연구가 범죄학의 주요 연구영역으로 등장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범죄 피해자 연구는 신고에 의한 형사범 통계만으로 형성된 범죄형상의 왜곡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¹⁸⁾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밝혀냈다. 낮은 신고율은 공식통계에 파악되지 않는 암수영역의 넓이를 가늠하게 한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¹⁹⁾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폭력 피해는 사회적 낙인(stigma)을 수반하기 쉽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육체적으로 ‘더럽혀졌다’는 사회적 낙인이 부가된다.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순결과 정절을 강조하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보다는 피해사실을 감춘 채 죄의식과 좌절감에 시달린다. 순결을 요구하는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사회적 낙인 효

18) 황만성,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35면.

19) 피해 여성의 연령층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 걸쳐 있다.

과 외에도 피해여성들은 피해사실을 공개한데 따른 형사절차상의 2차 피해 부담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피해자 유발론’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부모를 비롯하여 성인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진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이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부끄러운 기억으로 덮어두다가 청소년기에 들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인지하게 되거나 정신과 치료 과정에서 혹은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인지하게 되기도 한다.²⁰⁾

아동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낮은 데에는 신고의무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기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에서는 특별히 정한 아동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그러나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의한 신고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²⁾ 아동성범죄자 신고의무자를 대상 교육 주관기관인 탁틴내일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에서 2009년 교육 참가자 3,0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²³⁾ 조사대상자의 27.8%는 신고의무제도 자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²⁴⁾

이미정(2010)은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자로서 학교장과 교사들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학교

20) 이미정, “토론문: 현행 공소 시효의 문제점:성폭력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아동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협의회, 2007.

21) 제49조 3항에서는 이들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2) 이미정, “아동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아동성폭력 예방 국제 컨퍼런스 『아동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83면.

23)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 이현숙, “지역사회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현황 -학교 내, 청소년 기관 등의 신고 처리”, 제4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10, 72면.

에서 아동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아동성폭력 피해 사실이 교육청이나 매스컴 등에 알려지게 될 경우, 그것이 교장이나 교사의 인사평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²⁵⁾ 실제로는 그러한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동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해당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평가가 뒤따를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²⁶⁾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동성폭력 사건이 해당 학교의 책임자나 교사에게 인사평정상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성폭력 피해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매체에서도 피해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학교가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강간, 강간미수 등 ‘심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 신고율은 6.1%에 불과하였고, ‘가벼운 성폭력’의 신고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⁷⁾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성폭력범죄 피해 신고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²⁸⁾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중 유효응답자 34건 가운데 1건만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33건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19건(57.6%)으로 가장 많았고, 증거가 없어서 3건(9.1%), 경찰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3건(9.1%), 범인이 아는 사람이어서 3건(9.1%), 수치심 때문에 3건(9.1%), 개인적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2건

25) 이미정, 앞의 논문, 2010, 96면.

26) “(교장선생님 평가점수 반영과 관련하여) 있었어요. 보이지 않게 있었죠. 책임소재를 따지고, ‘그런게 알려지면 좋을 게 없다’ 그러는 거죠. 교장선생님 점수가 있는 건 아닌데, 평가에 부정적이죠. 이 학교에 대한 시각이 ‘다른 학교들이 나쁘게 본다’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서운 건 매스컴이거든요”(서대문구 초등학교 보건교사, 51세)(이미정, 앞의 논문, 95면)

27) 김성연,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85-87면.

28) 정현미·장규원·진수명·박철현,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34-35면.

(6.1%) 등으로 나타났다.²⁹⁾ 이러한 조사결과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피해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성폭력 피해 신고율은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최근 한 해 아동성폭력 피해 규모는 최소 1만 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29) 최인섭·기광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115-116면.

IV. 정부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

지난 2006년과 2007년 초등학교 성폭력 살해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2008년부터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강화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다. 2008년 2월에는 종래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보완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명령제도가 시행되었고, 그해 6월에는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3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고,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되었으며,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를 지닌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최장 15년에 이르는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2008년은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통적인 형벌 외에 추가적인 규제장치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해이다.

지난 2009년 ‘조두순사건’에 이어 올해 2010년에는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격리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또다시 관련 법안을 새롭게 개정하고 더욱 강화된 대책들을 내놓았다. 2010년 4월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6월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었다.

이 장에서는 올해 2010년 4월과 6월에 새롭게 개정된 법률안들을 중심

으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형사정책적 대응을 살핀다.

1. 개정 법률안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올해 2010년 3월 31일 국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범죄자 처벌과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이 만든 법이다.³⁰⁾ 이 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래 “7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³¹⁾

둘째, 음주나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책임무능력규정 및 한정책임능력 규정)³²⁾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³³⁾

셋째,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고³⁴⁾³⁵⁾,

30) 최석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 법안 리뷰, 2010, 157면.

31) 아울러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2)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3) 이는 지난 ‘조두순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 조두순에게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감경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하여 거센 비판이 일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청각과 발음기능에 장애가 있는 농아자에 대한 감경규정의 적용도 배제하고 있다.

34) 이 규정은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가 되었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 소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즉 DNA 증거자료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규정하여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을 반영하는 한편 성폭력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명

넷째,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³⁶⁾

다섯째,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³⁷⁾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³⁸⁾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정의, 성범죄 처벌 내용과 절차, 성범죄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2010년 4월 개정안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확히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최석림, 앞의 논문, 162면).

- 35)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은 성년이 된 때로부터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제도가 미성년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아동성폭력 관련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거나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적용, 즉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 36) 제23조에서는 피의자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맞섰으나 주요 외국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직 공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37)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에서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고, 이들이 담당검사의 수사계획 수립이나 영상녹화 조사 등 사건 초동단계부터 참여해 피해자의 2차피해를 막고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을 제출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파이낸셜 뉴스, “아동성폭력 전문가, 검찰 수사 참여”, 2010.5.7).
- 38) 이 법은 전부개정(2009.06.09 법률 제9765호) 이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었으나,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고지제도’를 신설하였고, 2010년 7월 개정안에서는 구법에 따라 법원의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현행법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규정을 적용하고,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신상정보의 등록·열람을 결정한 자와 향후 종전 법률에 따라 법원의 열람명령을 선고받게 될 자에 대하여도 현행법의 공개명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2007년 4월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2009년 5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안에서는

첫째, 전자발찌의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둘째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셋째 부착기간의 하한을 강화하고 상한은 범죄유형별로 10년에서 30년까지로 상향조정하고, 넷째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에 관한 근거규정(부칙 제2조)을 마련했다.³⁹⁾

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소위 ‘화학적 거세’의 도입을 담고 있는 이 법은 지난 2008년 9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로 발의되었다가

39) 이 조항에서는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살인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소급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으로 도입여부가 불투명해졌으나, 2009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로 명명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둘째 치료기간은 1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는데, 약물치료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되는 시점 2개월 전부터 시작하며, 셋째 징역형 복역 중인 성폭력범죄 수형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임박시에 법원의 결정으로 별도의 치료명령을 15년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넷째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약물치료 명령을 적용한다.

이상의 네 가지 법안을 통해서 도입되는 아동성폭력범죄 대책은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부착제도,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 3) 신상공개제도, 4) 화학적 거세제도의 도입 등이다.

2.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부착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교정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9월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 프로그램(이른바 전자발찌)⁴⁰⁾을 실시해 오고 있다.⁴¹⁾ 위치추적 전자감시 프로그램은

40) 전자발찌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하여 착용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이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동경로는 GPS를 통해서 탐지된다.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담당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 이동정보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고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착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보호관찰관을 현장에 출동

2007년 4월 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다. 이 법률은 2009년 5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성폭력 범죄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최근 개정안(2010.4.15)에서는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살인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소급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²⁾

우리나라보다 먼저 위치추적 전자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한 외국의 우범자 관리효과에 대한 평가는 서로 엇갈린다.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측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우범자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한편, 이호중(2010)은 이 제도가 외국에서도 시행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재범방지에 효과적인지 여부는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한다.⁴³⁾ 김혜정(2005)도 외국의 경우 전자감시 프로그램의 효과는 절도, 음주 운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 형벌 완화적 관점에서 구금형을 대체하는 방안으로서 긍정적 효과는 입증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⁴⁴⁾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를 분석한 조운오(2009)는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시를 종료한 모든 성폭력 범죄자 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프

시켜 착용자의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41) 미국에서도 연방차원에서 2006년 Adam Walsh Act를 제정하여 성폭력 범죄자에게 출소 후 전자감시를 실시해 오고 있다. 특별히 플로리다주에서는 소위 제시카 법안(Jessica Lunsford Act)을 제정하여 모든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출소 후 평생 동안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받게 하고 있다.

42)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도입하였다.

43) 이호중,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의 인권법적 쟁점,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0, 57면.

44)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2005, 262면.

로그램 종료자 대다수가 전자발찌 착용을 매우 고통스런 처벌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⁴⁵⁾ 또한 법무부에서는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자감시 장치 부착 대상자 총 472명 중 1명만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집계되어, 이 프로그램이 성범죄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감시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형사정책적 수단도 비용대비 효과나 명백한 범죄방지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기는 어려운 데다가⁴⁷⁾ 더구나 전자감시 프로그램은 최근 도입되고 있는 추세여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양한 형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

2008년 초 일련의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그해 6월 「치료감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여 형벌과 함께 치료 감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45) 조운오,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7호, 2009, 504면.

46) 법무부에서는 2009년 9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감시 장치 부착대상자의 동종재범률은 0.21%이고, 이종범죄를 포함한 전체 재범률은 0.42%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호중은 첫째, 통계가 산출된 기간이 너무 짧고, 둘째 이 통계상의 피부착자의 대부분은 가석방 혹은 치료감호의 가중료나 집행유예시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선고된 경우이고 형기종료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경우는 1명에 불과한데, 가석방이나 치료감호의 가중료, 집행유예는 이미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율 통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셋째 재범율이 측정된 기간이 불과 1년 여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이 종료하거나 가해제된 이후의 재범율을 추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이호중, 위의 발제문, 2010, 57면).

47) 김한균, 성폭력범죄자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4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 자료, 2010, 107면.

아동성폭력범죄자 중에는 소아성기호증 등 위험한 성향을 지닌 범죄자들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가능한 치료적 처우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는 ‘치료’ 보다는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도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용치료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⁴⁸⁾ 미국의 수용치료 처분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 중에는 이러한 수용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치료프로그램은 주당 수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며, 그 치료 프로그램이 일반교도소나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위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 보다는 위험한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려는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치료감호와 같은 치료수용모델은 강제적 수용과 치료방법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제도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치료 의지를 높이는 방향에서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

다. 신상정보공개제도⁴⁹⁾

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제도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48) 미국의 수용치료제도는 통상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라고 불려진다. 미국의 수용치료처분은 형기종료 후에 수용치료시설에 다시 수용된다는 점, 수용치료기간이 부정기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률」의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의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라는 사회공동이익을 구현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⁵⁰⁾ 이는 신상공개제도가 성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으로부터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⁵¹⁾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성폭력 사건이 전력자에 의한 재범율이 높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다.⁵²⁾ 이 법의 시행 초기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데 다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공개내용이 미흡하여 성범죄 재범을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이 제도가 운용되는 기간 동안에도 성폭력 범죄 전력자에 의한 아동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성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와 피해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시행되었다. 이 개정안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50) 김한균, “성폭력범죄자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4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10, 99면.

51) 2003년 헌법재판소의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합헌 결정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52)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추진되어 왔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은 외국의 연구결과로 볼 때나, 최근 국내 연구결과로 놓고 볼 때에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수정(2005)은 ‘재범’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공식통계에서 재범률 측정방식의 문제, 즉 동일한 범주에 대한 재범 여부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지 않은 다른 범주의 범죄(이종범죄)까지 포함시키는 일반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성범죄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동일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 동종범죄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재범률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이수정, “성범죄 재범률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방안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권 3호, 2005, 84면).

와 지원을 확대하며, 성 범죄자의 체계적인 등록 관리를 꾀하였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지난 2009년에는 ‘조두순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다시 확대 추진되는데, 지금까지 성범죄자 신상을 경찰관서에서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든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시스템(‘성범죄자 알림e’)을 운영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제도 시행 기간이 짧은 데다 최근 계속적으로 확대 강화되어 오던 터여서 그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V. 경찰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 현황과 개선방안

1. 경찰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

가.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제

성폭력범죄는 조사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의자의 자백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범죄 수사는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담수사관의 역량이 중요시 된다.⁵³⁾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청소년인 경우 수사관은 그 대상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하고 수사를 진행하여야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2006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 조항이 신설된 것은 이러한 명분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전담수사관을 검찰과 경찰에 지정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아동과 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경기동수사대를 원스톱 기동수사대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53) 이미정, 앞의 논문, 2009, 48면.

나. 아동심리전문가 참여제

경찰에서는 아동성폭력 피해자 조사의 전문성과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2007년부터 피해아동 조사단계에서 ‘아동심리전문가 참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면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진술을 이끌어내고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 분석을 통해 피해 진술의 증명력을 높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⁵⁴⁾ 2010년에는 시범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 18개 원스톱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다.

미국에서도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아동심리전문가를 참여시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아동심리전문가는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발생 이후 아동행동변화를 분석(Child Sexual Behavior Inventory: CSBI)하고 분석결과서를 법정에 제출한다. 이 분석결과서는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아동진술의 증명력을 높인다.⁵⁵⁾

다. 진술녹화제도

2003년 12월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당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조사시 진술 녹화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06년 10월 개정된 이 법률안에서는 그 대상을 16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및 원스톱 지원센터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상담 및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⁵⁶⁾ 2009년에는 성폭력 피해 아동

54) 이미정, 앞의 논문, 2009, 55면.

55) 이미정, 위의 논문, 55-56면.

및 장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1,778건의 진술녹화가 이뤄졌다.

라.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경찰은 성폭력 등 범죄피해 여성과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8월 경찰병원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개소된 이후 원스톱 지원센터의 전국적인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5년 12월에는 전국 14개 지역에 15개 센터가 설치되었다. 2010년 1월부터는 각도마다 센터가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 피해자들에게 의료, 상담, 수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원센터의 특징은 여성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수사, 법률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병원진료 후 진술녹화나 조서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 센터 내에 있는 진술녹화실에서 여성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치료 및 증거채취 절차를 받을 수 있고, 무료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10,471명의 피해자들에게 상담(21,400건), 진료(8,632건), 증거채취(2,876건), 진술녹화(2,273건), 피해자 조서 작성(5,839) 활동이 이뤄졌다.⁵⁷⁾

56) 경찰청, 경찰백서 2010, 72면.

57) 경찰청, 경찰백서 2010, 74-75면.

2.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대책 개선방안

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유

위치추적 전자감시 프로그램(전자발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특정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전자발찌 관리업무는 보호관찰관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보호관찰관의 업무 부담에 관한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대상자는 5만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28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호관찰관 1인당 158명의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제기된 문제이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전자발찌 운영 및 현장대응 인력을 일부 증원하도록 직제 개편을 했지만, 사법경찰관을 갖지 못한 한정된 보호관찰인력에 의한 대상자 관리와 출동시스템이 범죄예방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⁵⁸⁾ 이성용(2009)은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은 보호관찰의 범주를 넘어서 우범자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범자를 관리하고 범죄예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을 지적한다.⁵⁹⁾ 전자발찌 부착 시점부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김길태 사건’이 일어난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기본정보(성명, 거주지, 전자발찌 부착 개시 및 종료일 등)가 경찰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보호관찰소에서만

58) 이성용,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의 쟁점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6호, 2009, 187면.

59) 이성용, 위의 논문, 187면.

관리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날 경우 경찰의 검거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임호선(2010)은 경찰이 신상정보 열람·등록 대상자와 성폭력 우범자의 기본정보는 관리하고 있으면서⁶⁰⁾, 범죄 위험성이 훨씬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기본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⁶¹⁾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판결 등을 한 경우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외에 경찰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나. 경찰과 검찰 피해자 진술조사의 일원화

아동성폭력 피해아동이 형사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한 형태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 그리고 법원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사절차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 그것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피해자 조사과정을 한 번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수사, 법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

60)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서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해야 하며(제34조), 여성가족부 장관은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해야 하고(제35조), 등록정보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제 37조)고 규정하고 있다.

61) 임호선,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예방 및 성문화 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집, 여성가족부, 2010, 82면.

공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병원진료 후 진술녹화나 조서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 센터 내에 있는 진술녹화실에서 여성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치료 및 증거채취 절차를 받을 수 있고, 무료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은 경찰 차원에서 피해자 조사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이다.

경찰의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진술 녹화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의 진술 녹화가 반복된다. 검찰에서도 경찰과 유사한 장비를 구축하고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피해 아동은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다.⁶²⁾ 이수정(2009)은 이러한 반복된 진술녹화가 피해 아동의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은 원래 기억의 능력에 있어 외부 자극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높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질문기법으로 동일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반복하게 하는 경우, 사건을 더욱 정확히 기억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건 이후에 제시된 정보에 의해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⁶³⁾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진행하는 피해자 조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원스톱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바로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모인 곳에서 한 번의 진술로써 마무리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피해 진술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과정에 관련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아동 면접 전문가가 피해 아동의 진술을 받으면, 일방경(one way mirror) 밖에서 경찰과 검찰 및 관련 전문가(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들이 이어폰을 통해 피해 아동 면접 과정을

62) 이수정, “아동성폭력 예방과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29면.

63) 이수정, 위의 논문, 29면.

지켜보고, 피해 아동 면접 조사과정이 끝난 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팀 회의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경찰의 전담조사관, 검찰의 전담검사, 법원의 전담판사가 한 자리에 모이고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여 증거로 채택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피해 아동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중복 진술해야 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피해아동의 2차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2원화 개선

경찰 단계에서의 아동성폭력 수사과정은 대체로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일차적으로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성폭력 전담경찰관에 의한 피해 아동 조사가 이뤄지는데, 피해자 조사가 끝난 사건은 이차적으로 경찰의 수사 부서로 인계되고, 수사 부서에서는 피의자 수사 및 검찰 송치가 이뤄진다. 즉 아동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수사 및 피의자 수사가 이원화되어 이뤄지고 있다. 피해자 조사단계에서는 성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지정된 전담 경찰관이 각 지역 경찰서에 설치된 진술녹화실에서 진술녹화를 실시하고, 특별히 수도권 소재 5개의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조사단계에 심리전문가가 참여하여 피해 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를 마친 사건이 수사부서에 인계되어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보충 조사를 받게 되거나 피의자와의 대질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재조사나 대질조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수사가 한 부서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경찰서별로 아동성폭력 전담수사반을 설치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수사에서 송치까지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⁶⁴⁾ 성폭력 범죄 수사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경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성폭력 전담조사관을 지정, 전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술녹화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피해 아동을 조사해 나가기 위해서는 진술녹화실의 운영뿐만 아니라, 심리전문가의 참여도 요구된다. 이러한 아동성폭력 피해 조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아동성폭력 범죄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 전담부서의 설치는 우범자 관리차원에서도 요구된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 유형과는 달리 우범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에 아동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에도 성폭력 전담 경찰관과 검사가 지정되어 피해자를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법원에는 전담 재판부가 지정되어 있다.⁶⁵⁾ 문제는 성폭력 전담 경찰, 검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잦은 업무 이동으로 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기숙은 전담 검사·경찰이나 판사의 경우, 짧게는 1년에 2-3회 정도의 업무 이동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전문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찰 차원에서 아동성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전담수사반 설치가 어려운 기간 동안에는 그 대안으로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수사분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폭력수사 전문과정⁶⁶⁾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4) 임호선, “토론문,”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에서는 성폭력범죄 전담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에서는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6) 이 과정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아동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조사기법 교육

그래서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재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아동의 심리와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라. 대질신문의 자제 및 방식의 개선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아동을 대질조사하는 문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어 왔다. 연구자들은 대질신문이 피해아동에게 특별히 심각한 2차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0년 새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서도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의 대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여 불가피하게 피해 아동의 진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대질신문 방식이 아닌 간접적인 조사 방식이 필요하다. 예컨대 일방경(one way mirror)과 같은 차단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조사를 행함으로써 피해 아동이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⁶⁷⁾

마. 진술녹화 영상물의 적극적 활용 필요⁶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유형으로서 대표적인 형태는 중복출석과 반복진술이다. 진술녹화제는 이러한 문제를

이 이뤄지고 있다.

67) 한국성폭력상담소,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3, 154면.

68)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영상녹화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2004년부터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2004년부터 지방경찰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9년 말 현재 총 259개소(지방청 15, 경찰서 244)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영상물의 녹화와 증거보전은 수사단계에서 반복진술과 잦은 소환조사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⁶⁹⁾ 진술녹화제의 운영은 피해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과 그 진술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해 둠으로써 피해 아동의 소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반복진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방지할 수 있다.

진술녹화제는 피해아동의 중복출석과 반복진술에 따른 2차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진술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피해 아동에 대한 가장 초기 조사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진술 조서에 준하는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영상녹화물에는 진술 조서에 담기지 않는 피해 아동의 표정과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성폭력 특례법(제26조 4항)에서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영상녹화물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검찰에서는 “기소후 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대신 진술조사만 증거로 제출하거나, 진술조서에 부수적으로만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상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대부분의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고 있으며, 재판부에서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판결문에 영상물 자체를 증거로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⁷⁰⁾ 현실이다.

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3항에서는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도 진술녹화 영상물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5항에서는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영상물 녹화와 별도로 진술 조서의 작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현행법은 진술 영상물의 녹화와 더불어 진술 조서의 작성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에서 활용되는 것은 진술녹화 영상물이 아니라, 그 영상물의 녹화내용을 그대로 옮긴 진술조사이다.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녹화 영상물은 법정에서의 증거물로서 활용되지 못한 채, 단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도구로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임호선(2009)은 피해 아동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을 촬영할 시에 별도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⁷¹⁾ 피해자 진술 녹화 과정에서 진술조서 작성절차를 줄임으로써 조사담당자에게는 피해자 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⁷²⁾ 검찰 수사나 재판단계에서는 진술녹화 영상물이 증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 아동의 특성을 이해한 조사방식

성폭력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발달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조사방식이다. 아동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동

70) 대검 형사2과-5187(2009.11.13), ‘성폭력 피해아동 중복진술 방지방안’ (임호선, 토론문,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2009)

71) 임호선, 위의 글, 2009.

72)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진술 조서 작성을 위한 타이핑 작업이 조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다(91%)는 조사결과가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대책 워크숍 자료집, 2008, 23면).

의 진술이다. 피해아동의 진술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사건의 관건이다.

수사과정에서 아동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아동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정신적 연령에 맞는 수준에서 실제적 진실에 부합되게 기억하고 진술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개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사건의 실체를 기억하여 정확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은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을 받고서야 기억을 회복시키고 이를 진술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⁷³⁾

또한 아동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과 함께 낡은 정보의 훼손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진술조사를 하는 경우, 아동의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⁷⁴⁾

따라서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범죄 피해 조사과정에서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과 검사에게 조사를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에서는 아동과 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여경기동수사대를 원스톱 기동수사대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 기동수사대가 아동성폭력 범죄 피해를 조사하는 전담경찰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기적 행동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육이 이뤄지고, 부서의 이동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73) 여훈구, “유아의 증인능력 여부 판단기준,” 형사판례연구, 14, 2006, 199면.

74) 이미정, 앞의 논문, 2009, 53면.

VI. 맺음말

많은 연구자들이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중요하게 지적해 온 과제는 크게 볼 때,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과 피해 아동이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문제이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아동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 서이다. 아동성폭력의 경우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지 때문에 목격자를 확보하기도 어려우며 가해자는 자신의 유죄가 거의 증명되는 때에도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가해자의 유죄 여부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증거의 하나이다. 아동의 진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아동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방향은 조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전담조사관제도가 그것이다. 그밖에도 아동의 발달 특성을 잘 이해하는 심리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피해 아동 조사절차에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이다.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 아동의 진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진술의 반복과 복잡한 조사절차 과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정부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응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동성폭력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효

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더불어 수사절차상 아동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대책을 제안하였다. 현 위치추적 전자감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수사절차상의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피해자 진술조사의 일원화 필요성,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2원화 개선, 대질신문의 자제와 신문 방식의 개선,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경찰 진술녹화 영상물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식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은 ‘피해자 유발론’ 과 같은 왜곡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범죄 발생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피해자 유발론’ 은 범죄피해자나 그의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성범죄 피해자 수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사법적 절차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사회적 통념이 해소되어 가고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법적 절차가 이뤄져 갈 때,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더욱 쉽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성폭력과 관련한 암수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성폭력 범죄와 같이 사회적 낙인(stigma)이 될 수 있는 범죄 유형의 경우 범죄피해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범죄 예방과 근절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은영(2000),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2003),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제1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 김성언(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2009),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 김한균(2010), “성폭력범죄자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4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 자료, 여성부.
- 김혜정(200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 민영성(2009),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 범죄예방”, 법학연구, 제50권 제2호, 부산대학교.
- 박기범(2006),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 신호철(2005),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방법 및 재판방식의 특수성에 관한 고찰, 법무연수원 해외연구보고서.
- 심영희(2009), “어린이 성폭력의 변화와 요인: 지구화의 맥락에서,” 형사정책

연구, 제20권 제1호.

여성가족부(2009), 2009년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보고.

여훈구(2006), “유아의 증언능력 여부 판단기준,” 형사판례연구, 14.

윤덕경·황정임·김인순·최대현·김영란·최혜숙(2007),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가청소년위원회.

윤상민(2004),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이미경(2007), “토론문: 현행 공소 시효의 문제점:성폭력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아동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협의회.

이미정(2009), “아동성폭력 전담수사제의 효율적 대안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4집.

이미정(2010), “아동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아동성폭력 예방 국제 컨퍼런스:아동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성용(2009),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의 쟁점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6호.

이수정(2005),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권 3호.

이수정(2009), “아동성폭력 예방과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이현숙(2010), “지역사회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현황 -학교 내, 청소년 기관 등의 신고 처리”, 제4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여성부.

- 이호중(2010),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의 인권법적 쟁점,” 아동성폭력 재범 방지정책과 인권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임호선(2009), “토론문,” 2009년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치안정책 연구소.
- 임호선(2010),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 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예방 및 성문화 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집, 여 성가족부.
- 정현미·장규원·진수명·박철현(1999),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윤오(2009),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죠통제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 행정학회, 제37호.
- 최석림(20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 법안 리뷰.
- 최인섭·기광도(1998),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표창원(2010), “아동·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모색,” 아 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성문화 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집, 여성가족 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대책 워크숍 자료 집.
- 홍봉선(2010), “아동성폭력 예방정책의 현재”, 제4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여성부.
- 황만성(2004),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범죄분석」

경찰청, 「범죄통계」

경찰청, 경찰백서, 20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책임연구보고서 2010-27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 개선방안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영 식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